

제421회 임시회  
'24. 10. 11.(금)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현문 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 3. 제안사유

- 충청북도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40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발급을 하고 있음.

### <참고 1>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여가 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접수 및 언론 보도와 SNS<sup>1)</sup>

1) -“보조견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해라”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 거부한 주인...피해 장애인들,

를 통해 장애인 보조건 출입거부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이 알려져, 장애인 보조건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자체 또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장애인 보조건의 주요 대상자인 지체 및 시·청각장애인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총 66,319명(지체 43,368 / 청각 14,282 / 시각 8,669)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조건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해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에서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 인권위에 진정 제기 → 인권위“보조건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해소해야”(이데일리 보도 / 19.10.24.)
  - 롯데마트, 장애인 보조건 출입 거부 논란...“사과 없을 땐 불매”(헤럴드경제 / 20.11.30.)
  - 서울 목동 유명 식당서 장애인 보조건 출입 거부...각종 SNS에서 공분 커져 ( 24.8.22. )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돕는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함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정의 규정은 집행 과정상 명확성과 법 체계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용어의 정의와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본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도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본 조항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보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의 출입보장을 위해 도지사가 인식개선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례안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외에도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출입보장에 참여하는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건 출입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보장을 위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장애인 보조건 및 보조건과 동행한 장애인의 출입보장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임.
- 이러한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는 우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회환경 조성은 장애가 없는 지역주민의 복리 개선 노력과도 같은 선상에서 추진될 수 있는 만큼 그 목적과 추진 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